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5-1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1
2025-2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4
2025-3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11
2025-4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	발의일자	2024. 12. 30.
		발 의 자	이흥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의회에 의결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 (안 제2조)
- 다.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 (안 제3조)
- 라.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과 제출 시기에 대한 규정 (안 제4조~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2. 24 ~ 12.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거창군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사항 등) ①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등(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보고사항 등) ①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
 2.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
 3. 제2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등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거창군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의안형식) 제2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 동의안 형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결되어야 사항 및 보고해야 할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행한 절차 및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김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2	발의일자	2024. 12. 30.
		발 의 자	김혜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1. 제안 이유

거창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의장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 제5조)

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센터의 설치 (안 제6조)

라. 피해 신고의 접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와 지원 등 (안 제 7조 ~ 제 9조)

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안 제10조)

바. 보복 행위 신고, 거짓신고 금지 및 실태 조사 (안 제11조 ~ 제14조)

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16조 및 제19조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행정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2. 26. ~ 12.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과전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거창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등이 다른 의원, 공무원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성차별·성희롱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행위
 - 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의원,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피해 직원 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누구나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거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접수

2. 피해자의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자나 신고자를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의 접수) ① 누구든지 신고·지원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직장 내 괴롭힘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내에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분장 및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징계 처분 등) ① 의장은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 공무원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의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거짓 신고의 금지)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②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협조자의 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실태 조사)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상·하반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3
----------	--------

발의일자	2024. 12. 30.
발 의 자	신재화,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의회에서 개정·제정하는 규칙에 대하여 공포절차를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거창군의회 규칙·공포에 대한 사항을 공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안 제2조)
- 다. 전문(안 제3조)
- 라. 규칙번호(안 제4조)
- 마. 절차(안 제5조)
- 바. 공포일(안 제6조)
- 사. 시행일(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 제83조, 제97조, 제101조, 제10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59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해당없음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2. 26. ~ 12.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참고: 해당없음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의회규칙
2. 법 제83조, 제97조,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의 규칙

제3조(전문) ①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4조(규칙 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규칙 공포대장에 기록한다.

제5조(절차) ① 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회 사무과장이 공포절차를 밟는다.

② 규칙은 거창군 공보에 게재하거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제6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규칙을 게재한 거창군 공보가 발행된 날이

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7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포하는 규칙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규칙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한 규칙은 이 규칙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규 칙 공 포 대 장

계 인	공 포 번 호	제 목	공 포 내 용	공 포 일 자	주무과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4	발의일자	2024. 12. 30.
		발 의 자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부의 2024년 첫 시행 신규정책인 협약형특성화고 육성에 발맞춰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이동하고 같은 조에 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인구교육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2. 26. ~ 12.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이동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7.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사업 범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 ----- ----- -----
1.~ 5.(생략)	1.~ 5.(현행과 같음)
<신설>	<u>6.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사업</u>
<호 이동>	<u>7.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u>
<u>6.</u>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